



등록번호	건축행정과-4180
등록일자	2026. 1. 30.
결재일자	2026. 1. 30.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공동주택관리 지원팀장	건축행정과장	안전도시국 장	부구청장	구청장
					2026. 1. 30.
협조자					

충간소음 예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위한

공동주택 충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요 약

- 추진기간 : 2026. 2. ~ 12.
- 지원대상
 - 남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40세대
 - 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 등은 제외
- 사업내용 : 충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비용 일부 지원
(공사비의 70% 지원, 최대 75만원)
- 선정기준 : 자녀 수, 자녀 나이, 건축년도, 전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사업예산 : 30,000천원(전액 구비)
 - 민간자본사업보조 방식으로 소음방지 매트 시공 후 시공비 정산
 - 사업비 분담 비율 : 구비(70%) : 자부담(30%) ▶ 최대 75만원



건축행정과



사전 검토항목(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요약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검 토 확 인	해 당 없 음	비고
근 거 기 준	♦ 추진근거와 기준의 명확성은 확인하였습니까? 예) 법적근거, 명확한 기준, 당위성과 필요성	■	☐	
전문가 의 견	♦ 기관협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었습니까? 예) 법률(조례)상 타기관협의, 자문, 정책토론, 타당성 검토 등	☐	■	
예 산 확 보	♦ 사업비 확보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중기재정계획, 투자 심사, 국·시비 확보 등	☐	■	
청 령 비 리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및 자기진단 대상인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모니터링 처리 및 승인, 자기진단표 작성 등	☐	■	
주 민 참 여	♦ 주민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공모 등	☐	■	
안 전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은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 보험 등	☐	■	
중 대 재 해 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적용대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 등	☐	■	
갈 등	♦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수혜자, 피해자 분석과 대책, 상대적 민원 등	☐	■	
사회적 약 자 배 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 남·여 구분 등	☐	■	
협 치 협 력	♦ 타 기관(부서) 협치·협력(타자원 활용 등)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관련 부서, 중앙부처, 부산시, 타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홍 보 콘텐츠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방송매체, SNS, 구 홈페이지, 콘텐츠 저작권 등	■	☐	
평 가 연 계	♦ 업무평가 연계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부합동평가, 상급기관평가 등 각종 지표 관계	☐	■	
사 례 검 토	♦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기 시행여부, 유사 구·군 사례발굴 및 분석	■	☐	
기 타	♦ 업무와 연계된 사항 등 관련내용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문서공개여부, 전결사항, 보고서 체계, 오탈자,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보편적 내용, 바른 우리말 사용 등	■	☐	

- 층간소음 예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위한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 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하고,
-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

I. 추진근거

1.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2.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4조
3.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341(2025.7.23.)

II. 추진개요

1. 추진기간 : 2026. 2. ~ 12.

2. 추진대상

- 남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40세대
※ 다자녀가정 : 만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수직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 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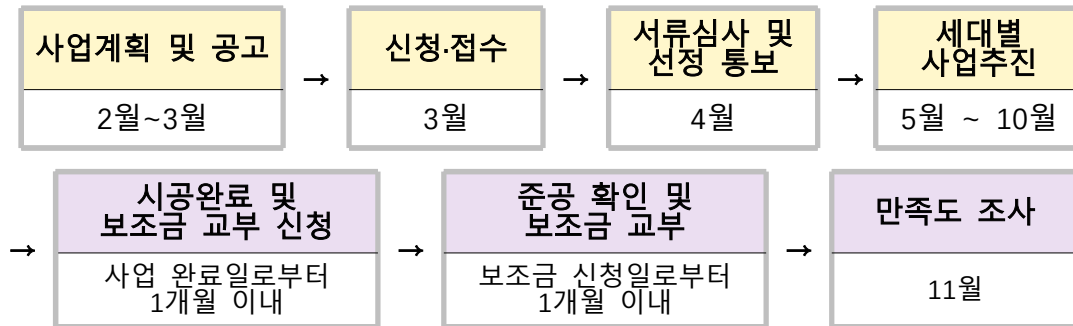
3. 사업내용 :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시공 시 설치 비용 일부 지원

- ※ 매트 판매업체 시공분에 한함. 신청인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제외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에 시공하는 경우에 한함

4. 사업예산 : 30,000천원(전액 구비)

- 민간자본사업보조 방식으로 소음방지 매트 시공 후 시공비 정산
- 사업비 부담 비율 : 구비(70%) : 자부담(30%) ▶ 최대 75만원

5. 추진절차



Ⅲ.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 기준 : 자녀 수, 자녀 나이, 공동주택의 건축 연도, 전유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평가 항목

항목	평가 기준	비고
다자녀가정의 만18세 이하 자녀수 (2025.12.31. 기준)	3명 이상(30점) / 2명(20점) / 1명(10점)	주민등록등본 확인
자녀 나이	만4세~만6세(30점) / 만3세 이하(20점) 만7세~만10세(10점) / 만11세 이상(0점)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중 높은 점수 하나만 적용 * 2025.12.31. 기준으로 나이 계산	
건축 연도	20년 이상(20점) / 10년~20년 미만(15점) 5년~10년 미만(10점) / 5년 미만(5점) * 2025.12.31. 기준으로 연도 계산	건축물대장 확인
전유 면적	85㎡ 이하(10점), 85㎡ 초과(0점)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0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 적용

- 자녀 수(많은 순) → 자녀 연령(최근 출생 자녀 있는 경우 우선)
- 건축 연도(오래된 건물 우선) → 전유 면적(작은 면적 우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선정 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부서 심사(정량평가)

○ 선정 결과 발표 : 2026. 4월 중

IV. 지원내용 및 범위

○ 지원 내용

-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방지 시공매트 설치 완료 후 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 ▶ 최대 75만원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	자 부 담
세대 기준 사업비*의 70% (상한 지원액 : 75만 원) * 사업비 = 매트 재료비 + 시공비 등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사업비 100만 원 이하) 사업비의 30% 또는 최대 30만 원 • (사업비 100만 원 초과) 지원금 7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 설치가능 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 보조금 지급 조건

- 대상자 선정 이후 매트 설치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발표일 전 시공계약은 보조금 지급 제외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후 만족도 조사

V. 향후 추진계획

1. 공고 및 홍보

○ 공고기간 : 2026. 2. 2.(월) ~ 3. 16.(월)

○ 홍보방법

- 홈페이지, 남구 신문, 스마트 게시판, 동주민센터 홍보
- 현수막 및 LED 전자게시대 게시
- 의무관리공동주택 동별 게시판 홍보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3. 3.(화) ~ 3. 16.(월) 18:00까지
 -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부산 남구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
 - 이메일 : bewise8207@korea.kr
- 구비서류
 - ①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② 매트 시공(예정)업체 견적서
 - ③ 매트 시공 예정 장소 사진 [붙임2]
 - ④ 사업의 성실 추진 서약서 [붙임3]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4]
 - ⑥ 주민등록 등본(생년월일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⑦ 건축물대장
 -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조에 의거
 - 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제출된 서류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표를 이용하여 부서 심사(정량평가)
- 선정 결과 통보 : 2026년 4월 중 (개별 통지)

4. 세대별 사업 추진

- 세대별 시공 계획에 따른 매트 설치 공사 시행 : 10월까지 완료

5.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시공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신청 후 1개월 이내 현장조사 및 검수를 통한 공사 완료 확인 후 지원금 교부

6. 만족도 조사 실시

- 층간소음 저감효과 등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Ⅵ. 행정사항

- 남구신문, SNS,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자료 등 홍보 ▶ 홍보담당관
- 남구 전자게시대 홍보 ▶ 재무담당관
- 회의자료 게재 및 주민참여 홍보 ▶ 동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 호

- 층간소음 예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위한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공고

살기 좋은 부산광역시 남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2. ~ 2026. 12.

다. 소요예산 : 30,000천원(구 70%, 자부담 30% ▶ 최대 75만원)

라. 지원대상 : 남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40세대

* 다자녀가정 : 만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 (2025.12.31.기준)

* 수직 아래에 주택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세대 등은 제외)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에 시공하는 경우에 한함

마. 지원내용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매트 판매업체 시공분에 한함. 신청인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제외

○ 지원금액 및 분담 비율

보조금 지원금액	자 부 담
세대 기준 사업비*의 70% (상한 지원액 : 75만 원) * 사업비 = 매트 재료비 + 시공비 등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사업비 100만 원 이하) 사업비의 30% 또는 최대 30만 원 • (사업비 100만 원 초과) 지원금 7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2 신청 및 선정기준

가. 신청기간 : 2026년 3월 3일(화) ~ 3월 16일(월) 18:00까지

나. 신청자격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다. 심사방법 : 자녀 수, 자녀 나이, 공동주택의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라. 선정기준

항목	평가 기준	비고
다자녀가정의 만18세 이하 자녀수 (2025.12.31. 기준)	3명 이상(30점) / 2명(20점) / 1명(10점)	주민등록등본 확인
자녀 나이	만4세~만6세(30점) / 만3세 이하(20점) 만7세~만10세(10점) / 만11세 이상(0점)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중 높은 점수 하나만 적용 * 2025.12.31. 기준으로 나이 계산	
건축 연도	20년 이상(20점) / 10년~20년 미만(15점) 5년~10년 미만(10점) / 5년 미만(5점) * 2025.12.31. 기준으로 연도 계산	건축물대장 확인
전유 면적	85㎡ 이하(10점), 85㎡ 초과(0점)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0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동점자는 아래 우선순위로 정함

- 자녀 수(많은 순) → 자녀 연령(최근 출생 자녀 있는 경우 우선)
 - 건축 연도(오래된 건물 우선) → 전유 면적(작은 면적 우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마. 발표일자 : 2026년 4월 중 개별통지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바. 신청서류 : [[5] 사업절차별 구비서류 참조]

사.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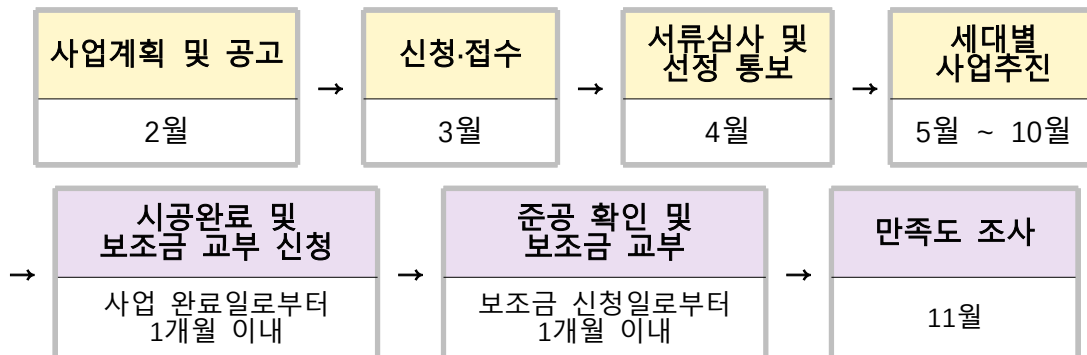
※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이메일 : bewise8207@korea.kr

※ 제출 서류를 식별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메일 송부

3 추진내용

가.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조금 지급 조건

○ 대상자 선정 이후 매트 설치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선정 발표일 전 시공 계약은 보조금 지급 제외)

○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후 만족도 조사

다. 문 의 처 : 남구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 051-607-3501)

4 유의 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 신청서 내용의 고의, 누락, 중대한 사항 허위 기재 시 선정 취소
- 다. 국세,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라. 매트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마. 임차인은 매트 설치에 대해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등 조치 필요
- 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 가능

5 사업절차별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

- ①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② 매트 시공(예정)업체 견적서
- ③ 매트 시공 예정 장소 사진 [붙임2]
- ④ 사업의 성실 추진 서약서 [붙임3]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4]
- ⑥ 주민등록 등본(생년월일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⑦ 건축물대장
-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에 의거
- 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 보조금 교부 신청

-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 [붙임5]
- ②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붙임6]
- ③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 ④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⑤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 [붙임7]
- ⑥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⑦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체확인증 등(총 사업비 확인 자료)

【붙임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지원신청서

신청인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산 남구					
연락처						
공동주택 거주 현황						
거주현황	자가 / 임차	건축연도	년	전유면적		m ²
다자녀가정의 만18세이하 자녀 수 (2025.12.31.기준)	명	설치장소	(작성예시)	거실	작은방	
		(면적)		00m ²	00m ²	
지원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비(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사업기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지원사업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75만원	총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위와 같이 층간소음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매트 시공(예정)업체 견적서						
2. 매트 설치 장소 사진(시공 전)						
3.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5.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생년월일 포함,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6. 건축물 대장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하는 경우)						

【붙임 2】

저감매트 설치장소 사진(시공 전)

예) 거실	
예) 작은방 1	예) 작은방 2

【붙임 3】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본인 등은 2026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지원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향후 지원이 중단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업의 성실추진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금 신청 계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원 신청자격 제한, 지원금 반납 등 부산광역시 남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회계 질서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보조금 관련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택 내부 사진	지방보조금시스템 사용 관련(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5년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지원사업 심사·선정 및 관리, 매트 시공 확인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지방보조금시스템 운영·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보조금 사업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처리 근거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생년월일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5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4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붙임 6】

부산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부산광역시 남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7】

시공 전 · 중 · 후 사진

설치 전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중
설치 후	설치 후

【붙임 8】

충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지원 대상자 평가기준 및 배점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결과	비 고
합 계		100		
다자녀가정의 만18세 이하 자녀수 (30점)	3명 이상	30		* 등본 상 확인되는 자녀에 한함 * 2025.12.31.기준
	2명	20		
	1명	10		
자녀 나이 (30점)	만4~6세(2020~2022년생)	30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중 높은 점수 하나만 적용 * 2025.12.31. 기준
	만3세이하(2023년생 이후)	20		
	만7~10세(2016~2019년생)	10		
	만11세이상(2015년생)~	0		
건축 연도 (20점)	20년 이상	20		* 건축물대장 기준
	10년~19년 이상	15		
	5년~9년이하	10		
	0년~4년	5		
전유 면적 (10점)	85㎡ 이하	10		* 건축물대장 기준
	85㎡ 초과	0		
기타 (10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1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동점자는 아래 우선순위로 정함 • 자녀 수(많은 순) → 자녀 연령(최근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 건축연도 (오래 된 건물 우선) → 전유 면적(작은 면적 우선)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